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www.namwon.go.kr

제29호 2019. 8. 16(금)

선 람	기관의 장

훈 령

- 남원시 훈령 제404호 남원시 청문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 ----- 1

공 고

- 남원시 공고 제2019-1429호 보상계획공고 -----10
- 남원시 공고 제2019-1432호 군도6호선 도로확포장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 12
- 남원시 공고 제2019-1444호 남원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공청회 개최 ----- 24

예 규

- 남원시 예규 제23호 남원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지침 ----- 26

회 람										
--------	--	--	--	--	--	--	--	--	--	--

남원시 청문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9년 08월 16일

남원시 훈령 제 404 호

남원시 청문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

남원시 청문사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남원시장”으로, “행정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에 따라”로,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을 “필요한 사항을”로 한다.

제2조 제1호 중 ““법제부서”라 함은”을 ““법제부서”란”으로, “기획실을”을 “부서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처분부서”라 함은”을 ““처분부서”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청문대상자”라 함은”을 ““청문대상자”란”으로,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행정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 중 “시장”을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라 함은”을 “경우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 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청문주재자는 법제업무담당이 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다만,”을 “다만, 법 제29조에 따른 제척·기피·회피 사유가 있는 경우 등”으로, “다른부서의 과장”을 “다른 부서의 담당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을 “사람을”로, “ 이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되, 2인이상 위촉하여 사안별로 주재 의뢰”를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청문 주재자로 선정된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조 중 “주재하는 자를 ”을 “주재하는 사람을 ”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의한 청문기록부”를 “다른 청문기록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청문대상자에게 행정절차법시행규칙”을 “청문대상자에게 「행정절차법 시행규칙」”으로, “의한 청문통지서”를 “다른 처분사전통지서”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의한”을 “다른”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제2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제2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단서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을 “제5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으로, “청문조서에 대하여”를 “청문조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의하여”를 “따른”으로 한다.

제13조 중 “남원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와 수당을”을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u>남원시장</u>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행정 처분을 함에 있어 <u>행정절차법</u> (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실시하는 경우에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청문의 방법 및 절차에 <u>관하여 필요한 사</u>	제1조(목적) ----- <u>남원시장</u> ----- ----- ----- 「 <u>행정절차법</u> 」 제22조제1항에 따라 ----- ----- ----- ----- <u>필요한 사항을</u> -----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제부서"라 함은 행정절차 관련 사무를 총괄하는 기획실을 말한다.
2. "처분부서"라 함은 행정처분 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실·과·소를 말한다.
3. "청문대상자"라 함은 청문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자로서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시장이 행정처분 전에 행하는 청문 사항에 적용한다.

제4조(임의적 청문대상) 법 제22조제1항제2호에서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 4. (생략)
5. 기타 시장이 청문이 필요하

-----.

제2조(정의) -----
-----.

1. "법제부서"란 ----- 부서를 -----.
2. "처분부서"란 -----.
3. "청문대상자"란 -----

-- 「행정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

제3조(적용범위) -----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

제4조(임의적 청문대상) -----

----- 경우란 -----

-----.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

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청문주재자) ①청문주재자는 법제부서의 장이 된다. 다만, 법제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른부서의 과장 이상 직위를 가진 공무원 중에서 청문주재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를 청문주재자로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되, 2인이상 위촉하여 사안별로 주재 의뢰할 수 있다.

- 1. 6급 이상의 공무원 경력을 갖은 자
- 2. 변호사
- 3. 대학교수
- 4. 건축·교통·위생·보건등 관련단체·협회에 종사하는 자 중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청문주재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청문주재자) ①청문주재자는 법제업무담당이 된다. 다만, 법 제29조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는 경우 등 -----다른 부서의 담당급-----.

②-----사람을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정-----.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③제2항에 따라 청문 주재자로 선정된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④ (생 략)

제6조(청문주재자의 호칭) 청문을 직접 주재하는 자를 청문주재관이라 칭한다.

제8조(협조 및 통지) ① (생 략)

②법제부서의 장은 처분부서의 장과 협의한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청문기록부에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법제부서의 장과 협의를 마친 처분부서의 장은 청문대상자에게 행정절차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청문통지서를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날의 1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청문의 결과) ①청문주재자는 청문을 마친 후에는 지체없이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청문조서를 작성하고, 그 원본은 처분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그 사본 1부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청문주재자가 작성한 청문조서는 법제부서를 거쳐 처분부서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청문주재자의 호칭) -----
주재하는 사람을 -----
-----.

제8조(협조 및 통지) ① (현행과 같음)

②-----

----- 따른 청문기록부-----
-----.

③-----
----- 청문대상자에게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 따른 처분사전통지서-----
-----.

제10조(청문의 결과) ①-----

----- 따른 -----

----- 제5조제2항에 따라 -----

의 장에게 송부하고, 그 사본을
법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조
서는 청문대상자가 청문에 출석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작성하여
야 한다.

③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
주재자로부터 청문조서를 접수
한 처분부서의 장은 행정처분시
에 청문주재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지체 없이 처분하여
야 한다.

제11조(처분결과의 통보) ① 처분
부서의 장은 청문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거나 처분하지 아
니하기로 결정하여 청문대상자
에게 처분 또는 통지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지체
없이 청문주재자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다만, 제5조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위촉된 청문주재자
에게 하는 통지는 법제부서의
장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갈음한
다.

② 청문주재자는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② 제1항에 따른 -----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라 -----

-----.

제11조(처분결과의 통보) ① -----

----- 따라 -----
----- 제5조제2항에 따
라 -----

-----.

② ----- 제1항에 따른 --

시 보

무원이 아닌 청문주재자에게는
남원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에 의거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
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
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

남원시 공고 제2019 -1429호

보 상 계 획 공 고

남원시에서 시행하는 **만인로 중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보상계획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08월 12일

남 원 시 장

1. 사업의 개요

- 가. 사업명 : 만인로 중로 개설공사
- 나. 사업위치 : 전북 남원시 향교동, 용정동 일원
- 다. 사업량 : 도로개설 L=1,100m, B=20m
- 라. 사업기간 : 2018 ~ 20212년(4개년)
- 마. 사업시행자 : 남원시장

2. 보상대상

- 가. 토지 : 남원시 향교동, 용정동 일원(편입토지 내역 : 별도 기재)
- 나. 물건 : 사업지구내 편입되는 위 토지상 지장물

3. 열람 및 이의신청

- 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19. 08. 12 ~ 2019. 08. 26.
- 나. 열람 및 이의신청장소 : 남원시청 도시과 (☎ 063-620-6464, 6463)
- 다. 열람 내용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역
- 라.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열람기간 중 토지 및 물건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열람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열람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장소 등에 비치 및 게시된 이의신청서에 이의내용을 기재하여 열람기간 만료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보상금 방법 및 절차

가. 보 상 시 기 : 감정평가 실시 후 개별통지

나. 보 상 방 법 : 소유권 이전 등기 후 현금 지급(계좌입금)

※ 근저당, 가압류 등과 같은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사전 말소 후 협의보상 가능

다. 보상액산정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의거 3인(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협의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되, 협의를 성립하지 아니 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보 상 절 차 :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손실 보상협의 및 보상금지급 ⇨ 수용재결(보상협의 불성립 시) ⇨ 공탁 및 수용

마. 감정평가업자 추천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 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남원시에 감정평가를 추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습니다.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남원시청 도시과(도시정비담당)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5. 기타사항

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남원시청 도시과(도시정비담당)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나. 보상 시기는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계획 및 열람안내문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게 개별 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 미수령자 등으로 통지를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 하오니, 상기 열람 장소에서 토지 및 물건 조서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개인별 보상액, 협의 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개별 통지합니다.

다. 사업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보상대상 물건의 편입면적(수량)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보상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남원시청 도시과 (☎ 063-620-6464, 6463)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공고 제2019-1432 호

군도6호선 도로확포장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부석~오촌 도로확포장공사 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와 관련하여 「도로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도로법」 제82조 제 2항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8. 16.

남원시장

1. 도로구역 결정(안)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 치	면 적 (㎡)	기 점	종 점	주 요 통과지	총연장 (km)
신설	군도	6	부석~오촌	남원시 송동면 장국리~송상리	65,511.6	남원시 송동면 장국리 669-7	남원시 송동면 송상리 82-7	-	2.6

2. 도로구역 결정 사유

- 지역간의 원활한 물동량 수송과 교통난 해소는 물론 지역간의 균형발전 및 주민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행하고자 도로구역을 결정하고자 함

3. 사업시행기간 : 2019년 1월 ~ 2021년 12월 30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 침”

5. 도로구역 결정(안)도 및 지형도면고지도 : “게재생략”

6.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2019. 8. 16. ~ 2019. 8. 30.(공고일로부터 14일 간)

나. 열람장소 : 남원시청 건설과(☎063-620-6532)

7.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서 열람 가능하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견 제출서

사업명		
사업장 위치		
사업자		
의견제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도로구역 결정 및 사업인정에 대한 의견		

「도로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도로법」 제8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안)에 따른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남 원 시 장 귀하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일련 번호	시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주 소	성 명	성명	주소	권리내용	
합 계					142,912.3	65,511.6						
1	남원	송동면 장국리	산221-3	도	664	305		남원시				
2	남원	"	산221-1	도	793	252	남원시 죽향동 26	구*임				
3	남원	"	1229	도	388	84		국 (국토해양부)				
4	남원	"	산222-1	도	397	244	남원시 죽향동 26	구옥임				
5	남원	"	1134-2	구	636	141		국 (농림축산식품부)				
6	남원	"	670-2	도	17	17		남원시				
7	남원	"	670-3	도	14	14		전라북도				
8	남원	"	1177	구	761.9	50		국 (농림축산식품부)				
9	남원	"	669-8	도	89	39	남원시 송동면 장국리 82	진*문				
10	남원	"	1113-1	천	19,608	407		국(재정경제원)				
11	남원	"	669-3	도	367	367	남원시 송동면 장국리 82	진*문				
12	남원	"	669-7	도	318	318		남원시				
13	남원	"	669-10	도	358	358		전라북도				
14	남원	"	1160-1	답	1,415.4	1,415.4	남원시 남문로 385-16, 707호	김*선				
15	남원	"	1160-9	답	23.2	23.2	"	"				
16	남원	"	1160-10	답	231.2	231.2	"	"				
17	남원	"	1178	구	608.2	142		국 (농림축산식품부)				
18	남원	"	669-5	임	93	93	남원시 송동면 장국리 608-3	김*수				
19	남원	"	669-6	답	46	46	남원군 송동면 장국리 659	강*임				
20	남원	"	670-1	도	317	208		남원시				

일련 번호	시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주 소	성 명	성명	주소	권리내용	
21	남원	송동면 장국리	1132	도	291	14		국(건설부)				
22	남원	"	1133-2	도	31	31		국(건설부)				
23	남원	"	1179	도	592.7	18		국 (농림축산식품부)				
24	남원	"	1134	구	6,110	801		국 (농림축산식품부)				
25	남원	"	668-4	답	91	91	남원시 송동면 장국리 608-3	김*수				
26	남원	"	산202-1	임	1,549	1,549	남원시 송동면 장국리 827	김*남				
27	남원	"	667-5	답	152	152		남원시				
28	남원	"	667-4	답	52	52		남원시				
29	남원	"	1230	도	947	470		국(기획재정부)				
30	남원	"	산203-1	임	947	947	남원시 송동면 장 국리 662	김*철				
31	남원	"	666-4	전	187	187	남원시 송동면 부석안길 51-3	손*례				
32	남원	"	1137	도	26	26		국(건설부)				
33	남원	"	677-2	전	188	188		남원시				
34	남원	"	677-1	도	311	311	남원면 쌍교리 70	양*묵				
35	남원	"	1116	구	6,418	991		국(건설부)				
36	남원	"	산201-2	임	1,281	1,281	남원시 대산면 갈랭 이길 1	주*진				
37	남원	"	678-1	도	192	192	남원읍 쌍교리 248	박*환				
38	남원	"	678-2	답	265	265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670-1	김*근				
39	남원	"	679-6	답	200	200	남원시 송동면 부석안길 51-3	손*례				
40	남원	"	산201-1	임	155	2		남원시				
41	남원	"	679-3	도	281	281	남원시 송동면 장국리 650	김*금				
42	남원	"	679-4	답	925	925	남원시 송동면 부석안길 51-3	손*례				

일련 번호	시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주 소	성 명	성명	주소	권리내용	
43	남원	송 동 면 장국리	679-5	구	252	252	경기도 의왕시 포일 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44	남원	"	681-1	도	231	231	송동면 장국리 ***	김태*				
45	남원	"	679-2	도	215	215	송동면 장국리 650	김*금				
46	남원	"	679-7	답	284	106	남원시 송동면 부 석안길 51-3	손*레				
47	남원	"	681-2	전	344	344	남원시 송동면 부 석안길 51-3	손*레				
48	남원	"	1117	도	800	241		국(건설부)				
49	남원	"	1116-1	구	5399	1597		국(건설부)				
50	남원	"	산 174-5	임	1673	1673		남원시				
51	남원	"	62-1	답	28	28		남원시				
52	남원	"	58-4	답	46	46		남원시				
53	남원	"	58-3	답	40	40		남원시				
54	남원	"	57-1	답	62	62		남원시				
55	남원	"	57-2	답	66	66		남원시				
56	남원	"	산 175-3	임	2861	2861	송동면 두신리 312	김*웅				
57	남원	"	56-1	답	470	470		남원시				
58	남원	"	56-2	답	169	169		남원시				
59	남원	"	55-1	전	407	407		남원시				
60	남원	"	53-1	전	623	623		남원시				
61	남원	"	54-1	대	75	75		남원시				
62	남원	"	52-1	전	494	494		남원시				
63	남원	"	산176-4	임	214	214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718 벽산블루밍아파트 203 동 1105호	김*호				
64	남원	"	52	전	871	871		남원시				

일련 번호	시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주 소	성 명	성명	주소	권리내용	
65	남원	송 동 면 장국리	33-1	전	340	340	남원시 송동면 송상 리 556	진*순				
66	남원	"	51	전	1273	1273		남원시				
67	남원	"	50-3	답	351	351		남원시				
68	남원	"	1119	도	33	4		국(건설부)				
69	남원	"	34	답	317	317		남원시				
70	남원	"	산177-4	임	465	465		남원시				
71	남원	"	1119-1	목	594	165	남원시 송동면 송 상장국길 183	류*선				
72	남원	"	산178-1	임	922	922	남원시 왕정동 113-1 비사별아파트 101동401호	진*현				
73	남원	"	산177-5	수	2132	196		남원시				
74	남원	"	35	답	410	410	남원시 송동면 장 국리 48	유*선				
75	남원	"	산178-5	임	109	109	남원시 향교동294 시영 아파트 107동 204호	박*임				
76	남원	"	36-1	목	46	46	남원시 송동면 송 상장국길 183	유*선				
77	남원	"	산178-4	임	2348	2348	남원시 왕정동 113-1 비사별아파트 101동401호	진*현				
78	남원	"	산179-1	임	135	135	송동면 흑송리	이*택				
79	남원	"	37-1	답	189	189	남원시 송동면 장 국리 48	유*선				
80	남원	"	37-2	답	65	65	남원시 송동면 장 국리 48	유*선				
81	남원	"	산238	도	198	119		국(건설부)				
82	남원	송 동 면 송상리	502-1	전	86	86	인천시 남구 청학동 62-1 영남청학아파트 가동 304호	진*엽				
83	남원	"	산146	임	6942	43	남원시 노암동 648	김해*씨사군파 재근종중				
84	남원	"	505-2	전	42	42	주생면 상동리	신*룡				
85	남원	"	505-1	도	3	3		남원시				
86	남원	"	503-3	전	35	35	남원시 송동면 송상리 573 - 17 -	박*주				

일련 번호	시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주 소	성 명	성명	주소	권리내용	
87	남원	송 동 면 송상리	656	도	56	56		국(건설부)				
88	남원	"	503-2	도	536	536		남원시				
89	남원	"	503-4	전	237	237	남원시 송동면 송 상리 555	조*남				
90	남원	"	643-13	구	2666	751		국 (농림축산식품부)				
91	남원	"	492-9	답	11	11	인천시 남구 학익동48-1 산동아파트33동205호	진*봉				
92	남원	"	655	도	806	527		국(건설부)				
93	남원	"	492-1	도	86	86		남원시				
94	남원	"	491-1	도	198	198		남원시				
95	남원	"	665-7	답	160.7	160.7		남원시				
96	남원	"	507-1	도	185	185		남원시				
97	남원	"	492-6	구	1816	77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 사				
98	남원	"	728	구	2003.4	1865		국 (농림축산식품부)				
99	남원	"	665-8	답	340.4	340.4	남원시 도량길 22-1	김*근				
100	남원	"	508-1	도	258	258		남원시				
101	남원	"	665-9	답	341.6	341.6	남원시 도량길 22-1	김*근				
102	남원	"	665-10	답	338.6	338.6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 동 498 태영아파트 상봉 동 데시앙 1411-903	박*규				
103	남원	"	510-1	도	241	241		남원시				
104	남원	"	665-11	답	345.8	345.8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 동 498 태영아파트 상봉 동 데시앙 1411-903	박*규				
105	남원	"	731	도	4066.2	1101		남원시				
106	남원	"	729	도	559.9	51		국 (농림축산식품부)				
107	남원	"	666-1	답	444.6	444.6		남원시				
108	남원	"	671-11	답	313.6	313.6	남원시 송동면 송상리 555	조*남				

일련 번호	시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주 소	성 명	성명	주소	권리내용	
109	남원	송 동 면 송상리	738	구	4912	1708		국 (농림축산식품부)				
110	남원	"	736	구	1597.2	1597.2		국 (농림축산식품부)				
111	남원	"	671-12	답	42.3	42.3		남원시				
112	남원	"	671-13	답	239	239		남원시				
113	남원	"	671-14	답	102.7	102.7		남원시				
114	남원	"	737	도	1876.4	1521		국 (농림축산식품부)				
115	남원	"	산133-4	임	31	31		남원시				
116	남원	"	산133-5	임	653	653		남원시				
117	남원	"	산133-2	임	195	195		남원시				
118	남원	"	산133-3	임	62	62		남원시				
119	남원	"	757	구	3146.4	456		국 (농림축산식품부)				
120	남원	"	758	도	1778.9	788		국 (농림축산식품부)				
121	남원	"	759	구	2856.2	914		국 (농림축산식품부)				
122	남원	"	680-21	답	117.9	117.9		남원시				
123	남원	"	680-20	답	110.4	110.4		남원시				
124	남원	"	680-19	답	146.1	146.1	남원시 송동면 송상 리 296-1	김*만				
125	남원	"	680-18	답	270.6	270.6	남원시 송동면 송상 리 296-1	김*만				
126	남원	"	680-17	답	111.8	111.8	남원시 송동면 송상 리 283	김*만				
127	남원	"	680-16	답	143.3	143.3	남원시 송동면 송상 리 296-1	김*만				
128	남원	"	680-15	답	159.4	159.4		남원시				
129	남원	"	680-14	답	724.7	724.7		남원시				
130	남원	"	760	구	3,852.1	421		국 (농림축산식품부)				

일련 번호	시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주 소	성 명	성명	주소	권리내용	
131	남원	송동면 송상리	761	도	417.3	417.0		국 (농림축산식품부)				
132	남원	"	762	구	3428.6	56		국 (농림축산식품부)				
133	남원	"	258-6	답	127	127	남원시 월락동 227-1	전주최씨가선공 파종중				
134	남원	"	258-4	도	83	83		남원시				
135	남원	"	269-2	도	48	48		남원시				
136	남원	"	302-2	도	46	46		남원시				
137	남원	"	301-2	도	76	45		남원시				
138	남원	"	629	도	1427	709		국(건설부)				
139	남원	"	269-1	전	582	582		남원시				
140	남원	"	298-2	도	152	66		남원시				
141	남원	"	298-3	도	180	180		남원시				
142	남원	"	270-2	전	664	664		남원시				
143	남원	"	298-4	묘	104	104	남원시 송동면 신평리 936-1	장*만				
144	남원	"	297-2	전	214	214	남원시 송동면 신평리 936-1	장*만				
145	남원	"	270-1	도	236	236		남원시				
146	남원	"	297-1	도	81	81		남원시				
147	남원	"	산100-1	임	555	555		남원시				
148	남원	"	산79-4	임	2909	2909		남원시				
149	남원	"	산80-4	임	3141	314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 동 274 청솔아파트 708-612	조*익				
150	남원	"	271-1	전	13	13		남원시				
151	남원	"	271-2	도	188	188		남원시				
152	남원	"	271-4	전	594	594		남원시				

▣ 지장물조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물건명	상황 및 구조	편입수량 (㎡)	소 유 자	
	면	리					주 소	성 명
1	송동	장국	1134	매실		17주		
	"	"	"	호두나무		1주		
2	"	"	1134	매실		24주		
3	"	"	1134	간판		1식		
4	"	"	666-1	감나무		6주		
	"	"	"	두릅		60주		
	"	"	"	사과나무		2주		
5	"	"	659	계사		1식		
6	"	"	659	감나무		2주		
	"	"	"	은행나무		2주		
	"	"	"	백일홍		7주		
7	"	"	681	관정		1식		
8	"	"	681	창고		1식		
9	"	"	52	복숭아		21주		남원시
	"	"	"	매실		7주		남원시
10	"	"	52	창고		1식		남원시
11	"	"	52	물탱크		1식		남원시
12	"	"	52-1	매실		3주		남원시
	"	"	"	감나무		2주		남원시
13	"	"	54	산수유		3주		남원시
	"	"	"	사철		1주		남원시
	"	"	"	철쭉		3주		남원시
	"	"	"	매실		3주		남원시
	"	"	"	감나무		4주		남원시
	"	"	"	개나리		10주		남원시
	"	"	"	목련		2주		남원시
14	"	"	37	감나무		3주		
	"	"	"	무궁화		5주		
15	"	"	산178	분묘		2기		
16	"	"	산178	정자		1식		
17	"	"	36	수도		1식		
18	"	"	36	창고		1식		
19	"	"	36	무궁화 등		33m		
20	"	"	36	간판		1식		
21	송동	송상	503-1	분묘		1기		
	"	"	"	옥향		12주		
	"	"	"	황금촉백		2주		

☒ 지장물조사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물건명	상황 및 구조	편입수량 (㎡)	소 유 자	
	면	리					주 소	성 명
22	송동	송상	517	감나무		7주		
	"	"	"	이팝		1주		
	"	"	"	모과		1주		
	"	"	"	보리수		1주		
23	"	"	270	비닐하우스		160		남원시
24	"	"	"	분묘		1기		남원시
25	"	"	271-1	분묘	합장	1기		남원시
26	"	"	산81	분묘		2기		
	"	"	"	상석		1식		
27	"	"	산80	분묘		2기		
	"	"	"	상석		1식		
28	"	"	산133	분묘		2기		

남원시 공고 제2019 - 1444호

남원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공청회 개최

남원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2019. 08. 19.

남원시장

1. 목적

- 남원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하여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내실 있는 저감대책을 수립하기 위함.

2. 개최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9. 09. 05(목) 14:00
- 장소 : 춘향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3. 계획의 개요

- 과업기간 : 2018. ~ 2019.
- 목표연도 : 5년 주기, 향후 10년(2019~2028)
- 과업대상 : 남원시 전역(A=752.40km²)
- 대상재해 : 하천·내수·사면·토사·바람·해안·기타 등 6개 유형

4. 계획안 열람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장소 : 남원시 안전재난과 및 각 읍면동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19. 08. 29까지
- 의견제출 : 공고일로부터 2019. 08. 29까지 서면제출(도착분에 한함)
(우 55738)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안전재난과 자연재난담당
(제출처 : 남원시 안전재난과(전송 063-620-6747))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남원시 안전재난과(063-620-6962)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견 제출서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E-mail			
	연락처	☎ () -	핸드폰	- -

제 목

※ 간략하게 기재

내 용

2019년도 남원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대한 주민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제 출 자 : (서명)

※ 무기명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남원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9년 08월 16일

남원시 예규 제 23 호

남원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 허가 및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교통대책을 도모하고 시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굴착 사업”이란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지하매설물에 한다)의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의 노면, 길 어깨, 비탈면 등의 도로구역(도로예정지 및 준용도로를 포함한다) 안에서 굴착을 수반하는 공사를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도로굴착관련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시행하고 있는 자, 또는 시행한 자를 말한다.
3. “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법에 따라 도로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도로를 신설·확장하거나 노면의 재포장 또

는 덧씌우기 공사를 완료한 도로를 말한다.

4. “신설 또는 개축한 날” 또는 “공사가 완료된 날”이란 각종 도로공사(신설 · 개축 · 확장 · 재포장 · 덧씌우기 · 도로굴착 공사 등)의 준공 일을 말한다.
5. “일반매설물”이란 「도로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1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6. “소규모 굴착공사”란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차량의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굴착하는 경우에는 30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인 굴착공사를 말한다.

제3조(도로굴착 사업계획 신청 공고) ① 시장은 매년 1월 · 4월 · 7월 및 10월 중에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도로굴착 사업계획 신청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1. 신청대상
2. 신청기간
3. 구비서류
4. 접수처
5. 신청요령
6. 그 밖의 도로굴착 사업계획 신청 시 필요한 사항

제4조(도로굴착 사업계획 신청) 도로굴착 사업계획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도로굴착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복구공사 및 소규모 굴착

공사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교통소통대책
2. 먼지발생 방지대책
3. 안전사고 방지대책
4. 도로시설 유지대책
5. 주요 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5조(도로굴착 사업계획 검토) 시장은 도로굴착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제6항에 따라 도로의 신설·확장 또는 개량한 날부터 3년(보도의 경우에는 2년)이내 굴착을 제한하는 도로인지 여부
 - 가. 위치도면 및 설계도면
 - 나. 지하매설물 안전대책(굴착부위 또는 인근에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 해당 관리기관의 관리자의 협조)
 - 다. 주요 지하매설물 사후관리계획(사업 시행자가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 한함)
 - 라. 교통소통대책, 먼지발생방지대책, 안전사고방지대책, 도로복구방법, 도로시설물 유지대책
3. 영 제56조제6항에 따른 굴착을 제한하는 도로인지 여부
4. 우기(7월경)와 동절기(12월~다음해 2월)의 굴착여부

제6조(도로관리심의회 심의 의뢰) 제5조에 따라 도로굴착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도로굴착조정신청서를 작성하고 영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상정하여 심의조정을 거쳐야 한다.

제7조(심의회 심의·조정 결과 통보) 심의회로부터 심의·조정결과를 통보받은 시장은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 및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도로굴착 허가 신청) ① 심의회 심의·조정 결과를 통보받은 사업시행자는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를 작성한 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직전의 도로점용(굴착·복구)공사 구간에 대한 현장조사 후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도로파손 유무조사서를 작성하여 허가신청하려는 경우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시행한 도로점용(굴착·복구)공사에 의하여 도로파손이 발생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시장에게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히 도로의 굴착·복구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장 및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교통소통 및 주요 지하매설물 안전대책 등에 대하여 관계자와 공사현장에서 협의한 후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완료 후 그 결과를 시장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검토 및 허가)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에 허가하여야 한다.

1. 심의회 심의·조정내용의 반영 여부

2. 도로점용의 기간·위치 및 면적의 타당 여부

3. 원상복구의 시기 및 방법의 적정 여부

4. 1일 작업계획 물량의 적정 여부

5. 그 밖의 법령 등 저촉 여부 및 현지여건상 제한요소가 있는지 여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기 약 1개월 또는 동절기 약 3개월 동안에는 굴착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굴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긴급 굴착공사와 주민생활에 직결된 소규모 굴착공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시장은 사업시행자가 도로의 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부담금을 납부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굴착 및 복구 연계 공사체제 확립을 위하여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④ 허가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1일 굴착·복구 일정 계획대로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허가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내용을 작성하여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착공계 제출) ① 사업시행자가 그 허가 내용에 따라 도로점용(굴착·복구)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굴착공사를 착공하기 5일 전 별지 제9호서식의 착공계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내용을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공사의 지도·감독) 시장은 해당 공사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을 지정하

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공사 중 도로구조의 보호 및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 굴착할 지점과 주요 지하매설물(일반매설물 포함)의 매설위치를 표시하는
표지의 설치 및 그 적정성 여부
2. 1일 작업물량 이행 여부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기관 전담자의 공사현장 입회 여부
4.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조건의 이행사항 준수 여부
5. 교통소통시설·공사안내 표지판 및 각종 안전시설의 설치 여부

제12조(공사의 완료) ① 사업시행자는 허가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즉시 별지 제10호서식의 도로복구 완료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로복구 완료확인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준공도면을 붙여야 한다.

1. 축척 1/1,200(시의 수치지도 1/1,000) 이상에 지하매설물의 점유 위치,
종류, 규격, 재질, 점유 위치표지 등 도로의 유지관리에 필 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한 평면도 1부
2. 1/200 이상 축척으로 작성한 횡단면도 1부

③ 제1항에 따라 도로복구 완료확인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7일 이내에 허
가내용대로 공사가 시행되었는지 여부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도로복구 준공확인서를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주요 지하매설물(일반매설물 포함)의 매설위치를 표시한 표지 등이 적정

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

2. 준공도면 제출 및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제13조(준공도면의 보관·관리) 시장은 준공도면을 영구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및 사고예방 활동 등에 활용한다.

제14조(점검 등) ① 시장은 도로점용(굴착·복구)공사에 대하여 연 2회 이상(상반기·하반기) 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조건 및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도로점용(굴착·복구)공사 관리부를 갖추어 두고, 점검결과 및 조치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도로굴착사업계획신청 공고

남원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의 구역에서 지하매설물(전기, 전화,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을 설치 또는 개량하기 위하여 도로굴착을 하려는 자는 「도로법 시행령」, 「남원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지침」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굴착 사업계획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 1. 신청대상 :
- 2. 신청기간 :
- 3. 붙임서류 :
- 4. 접수처 :
- 5. 신청요령 :

가. 건물 신축 등에 따른 지하매설물(전기, 전화,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의 설치공사를 위하여 도로굴착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하매설물 관리부서가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위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 도로굴착사업계획의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예산의 추가 확보, 사업계획의 변경, 시민생활 관련 민원 사항 등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한 사항은 ○○월초 에 별도로 도로굴착 사업계획을 조정하게 됩니다.

6.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건설과(063-620-653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서식]

도로굴착사업계획서

신청자			
주 소		전화번호	

「도로법 시행령」 제56조, 「남원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지침」 제4조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신청내역

번호	노선명	공사명	굴착 구간	시행 부서	매설 관경	포장 종류	연장(m)	공사 기간	비고

□ 붙임서류

1. 위치도면(1/5,000 현황도에 표시) 1부
2. 설계도면
 - 가. 시의 수치지도 1/1,000에 지하매설물의 점유위치, 점유위치표지 등을 표시한 평면도 1부
 - 나. 1/200축척으로 작성한 횡단면도 1부
3. 주요 지하매설물 안전대책(굴착부위 또는 인근에 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 1부
4. 주요 지하매설물 사후관리계획(사업시행자가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 한함) 1부
5. 교통소통대책 1부
6. 먼지발생대책 1부
7. 안전사고방지대책 1부
8. 도로복구방법 1부
9.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남원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도로 굴착조정신청서

1. 신청개요

연 번				굴착목적				
굴착시행자				굴착위치				
굴착개요	구분	계	아스콘	콘크리트	보도 투수콘	보도 블럭	소형 고압블럭	기타
	연장							
	면적							
굴착기간								
관 리 청 현지조사 검토의견								
위치도								

※ 굴착구간 전경사진 첨부

2. 굴착단면도

연번		굴착구간	
1. 지하매설물 현황도			
※ 굴착지역에 대한 도로횡단면도임.(100M간격으로 작성)			
2. 굴착계획도(도로횡단면도)			
3. 관로굴착복구단면도			
4. 유관기관 확인 (주요지하매설물에 한함)	기관명	담당자	의견
	남원시 상수도사업소	(서명또는날인)	
	남원시 환경사업소	(서명 또는 날인)	
	전북 도시 가스	(서명 또는 날인)	
	한국 전력 공사	(서명 또는 날인)	
	대한송유관공사	(서명 또는 날인)	
	한국 가스 공사	(서명 또는 날인)	
	KT	(서명 또는 날인)	

3. 각종 안전관리대책

연번	구분	구분	구분
1.	교통소통대책		
2.	먼지발생 방지대책		
3.	안전사고방지대책		
4.	도로복구방법		
5.	도로시설물 유지대책		
6.	주요지하매설물 안전대책(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		
7.	검토자 의견		

- ※ 1. 지면이 부족한 경우 여러 장으로 나누어 작성
2. 7번의 사항은 심의기관에서 작성

붙임서류 :

1. 위치도면 (1/5,000 현황도에 표시) 1부
2. 굴착복구 설계도면
 - 가. 시의 수치지도 1/1,000에 지하매설물의 점유위치, 점유위치표지 등을 표시한 평면도 1부
 - 나. 1/200축척으로 작성한 횡단면도 1부
3. 복구업체 면허증 사본 (신청인이 복구할 경우) 1부
4. 도로과손유무조사서 (별지 제5호서식) 1부
5. 굴착부위 또는 인근에 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 대책 1부
6. 사업시행자가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 주요 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 계획 1부
7. 교통소통대책 1부

※ 붙임서류 중 도로관리심의회에서 조정된 사항이 없는 서류는 중복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	1,000원
근거법령	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제61조제1항)
※유의 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 나. 허가를 받은 자는 「남원시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변상금을 부과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 다.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도로관리청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관리심의회에 제출하여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제61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56조) 라. 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완료 30일 전까지 연장허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작성방법

- ①란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록
- ②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용 기록
- ③란은 남원시의 수치지도 1/1,000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을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m²)을 표시
- ④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록
- ⑤란은 도로굴착 점용기간 기록
- ⑥란은 콘크리트, 강관 등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록
- ⑦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으로 작성
- ⑧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 시 “신청인 복구”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작성
- ⑨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만 “1일 굴착·복구일정계획” 서식에 작성하여 제출
- ⑩란은 “일반국도”, “특별시도”, “시군도”로 구분하여 작성
- ⑪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 하수도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유관, 송열관, 전력구, 통신구, 작업구, 어스양카, 통로, 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²·○○m를 기록

[별지 제5호서식]

도로 파손유무조사서

1. 공 사 명 :
2. 시행부서 : (전화번호 :)
3.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년 월 일)
4. 착 공 일 :
5. 준 공 일 :
6. 조사내용

구 분	구간(위치)	연장(m)	면적(m ²)	도로파손현황	비고
계					
아스팔트포장도로					
콘크리트포장도로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CA)					
보 도					
경계블록 및 측구					
기 타					

붙임 : 현장사진 1부.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공사 직전의 현장에 대한 조사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날인)

남원시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허가번호 제 호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증

- 1. 공사명 :
- 2. 공사위치 :
- 3. 신청자 :
- 4. 복구자 :
- 5. 점용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월 일간)
- 6. 굴착·복구 기간 :
- 7. 굴착 및 복구개요

포장별	폭 (m)	연장 (m)	면적(m ²)	포장 등급	복구비(원)	비고
계						
아스팔트 포장도로						
콘크리트 포장도로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CA)						
보 도						
경계블록 및 측구						
기 타						

「도로법」 제61조 「남원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지침」 제9조에 따라 붙임 조건을 부여하여 도로점용(굴착·복구)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 허가 조건 >

1. 굴착허가 기간 내에 시공하지 않을 경우 허가는 자동무효가 되며, 허가기간 외의 굴착은 불법굴착으로 인정됩니다.
2. 도로굴착·복구 작업시간
 - 가. 주간 :
 - 나. 야간 :
3. 공사특성상 당일굴착·당일 복구가 안 되는 사업구간은 토사 유출방지를 위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도로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4. 도로시설물인 측구, 보차도 경계블록(석), 가드레일, 가로등 및 가로수 등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고, 하수구가 메워지는 일이 없도록 가마니·모래주머니 등으로 보호 조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주변에 자재, 토사, 오수 등의 잔재방치를 금하며 항상 정돈된 환경을 유지하고, 공사완료 후에는 주위를 청결히 정비하여야 합니다.
5. 공사기간 중에는 안전칸막이, 안내간판 및 야간조명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교통처리에 대하여는 관할경찰서와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모든 책임이 시행자가 져야 합니다.
6. 미 포장구간은 추후 포장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최소 1미터 이상 깊이로 매설하여야 합니다. 이의 불이행으로 지장 및 손상이 있을 시는 매설자 자체부담으로 이전 또는 재 매설하여야 합니다.
7. 부실시공 및 조건 미 이행 시에는 아래와 같이 조치됩니다.
 - 가. 복구지연 시(원인자) - 1회 경고 후 3일 이상 지연 시 관리청에서 복구 및 복구비 추정
 - 나. 부실시공 시 - 1회 경고(재시공), 2회이상 적출시 고발 및 신규 굴착허가 유보
 - 다. 굴착 토·자재 방치로 통행불편 초래 시 - 1회 경고, 2회 이상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
8. 기타 사항
 - 가.
 - 나.
 - 다.

[별지 제9호서식]

착 공 계

1. 공 사 명 :
2. 시행부서 : (전화번호 - -)
3. 굴착업체 : (전화번호 - -)
4. 복구업체 : (전화번호 - -)
5.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년 월 일)
6. 착공예정일 :
7. 준공기한 :
8. 굴착 및 복구예정 물량

구 분	구간 (위치)	연장(m)	비 고
계			
아스팔트 포장도로			
콘크리트 포장도로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CA)			
보 도			
경계블록 및 측구			
기 타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공사를 하고자 착공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남원시장 귀하

감독경유	소 속		직 위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11호서식]

도로복구준공확인서

- 1. 공 사 명 :
- 2. 시행부서 :
- 3. 굴착업체 :
- 4. 복구업체 :
- 5.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년 월 일)
- 6. 착 공 일 :
- 7. 준 공 일 :
- 8. 복구내용

구 분	구간(위치)	연장(m)	면적(m ²)	비고
계				
아스팔트 포장도로				
콘크리트 포장도로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CA)				
보 도				
경계블록 및 측구				
기 타				

위와 같이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별지 제12호서식]

도로점용(굴착·복구)공사관리부

연 번	허가 번호	허가일	관리부서	점검(하자검사) 일	점검(하자검사) 기관	점검결과 하자(위반)사항				조치결과		확인		
						내용	폭 (m)	연장 (m)	면적 (㎡)	기간	내용	담당자	담당	과장